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유 인 환 위 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재무과장)	일 자	질의	2011년 12월 14일
			답변	2011년 12월 14일
회 의	제1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7차 예결특위			

질문요지

-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대비 100,000천원 증가한 사유에 관하여?

답변내용

공유재산 대부료 세입예산 증가 사유

- 2010년도 대부료 세입예산 : 200,000천원
- 2011년도 대부료 세입예산 : 200,000천원
- 2012년도 대부료 세입예산 : 300,000천원(증 100,000천원)

(증가요인)

- 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인상 : 매년 3~5% 인상
 - 2012년도 공시지가 10% 이상 인상 예상(국토해양부 지가현실화 방침)
- ② 공유지 매입에 따른 대부면적 증가(공유지 집단화사업 등)
 - 대화 땀띠지구 집단화 부지 대부 : 16필지 27,160㎡
- ③ 무단점유재산 색출에 따른 대부면적 증가 64건, 37,435㎡

※ 2011. 11월말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액 : 303,000천원